



펫 살롱 고객명부 및 정보카드의 영업비밀성 인정여부 관련 항소심 사건

33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고등법원 지적재산제2부	사건번호	평성16년(네) 제5334호
판결 일자	2005. 2. 24.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 2조 1항 4호, 3조 1항, 3조 2항		
영업 비밀	고객명부 및 정보카드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경업금지의무, 불법행위		

02 사건 개요

원고 A는 펫 살롱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B와 피고 C는 피고 A가 운영하는 펫 살롱의 직원이었다. 피고들은 피고 A의 점포를 퇴직 한 후, 5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펫 살롱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피고인들의 영업에 있어, 본인의 고객명단과 정보카드를 이용한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하며, 고용계약 상태에서부터 자신의 점포를 개점을 준비한 것은 경업금지의무에 반하고, 경업행위를 하고 고객을 권유하고 뺏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상기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이에 항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항소인)	⇔	⇐	피 고 (피항소인)
고객명단과 정보카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고객명부는 단순한 주소록에 불과하며, 영업비밀로 특정할만한 요소가 없다.
근무시간 중에 피고들의 점포 개점 준비행위나 원고 고객에 대한 권유행위는 고용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다.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점포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동일한 점포를 개점하면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중요한 비밀정보를 훔쳐내 영업에 방해한 것은 고의적인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는 불법행위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

04 판결 요지

해당 고객명부와 정보카드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베테랑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고객카드로 인해 기술자가 교체가 되어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고객카드의 설명서를 미루어 볼 때, 이는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 이용되고 있음이 논리적이다. 또한 고객명부의 내용이 정보카드의 내용과 중복되는 등 상기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재직 중일 때부터 근무시간 중에 피항소인들 점포의 개점준비행위나 원고 고객들에게 권유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만이 존재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고용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 점포의 중요한 비밀정보를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 피고들이 퇴직 후 점포를 개점한 것 자체는 전혀 위법한 일이 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해당 영업노하우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지만, 상기 노하우 자체는 항소인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종합하면, 본건의 고객명부 및 정보카드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들에 대한 고용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으며, 불법행위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05 Key Point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요한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성립시킬 비밀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퇴직 후 동종회사를 설립한 사정만으로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상의 노하우가 개인적인 것이라 하여 개인만이 모든 권리를 독점할 것은 아니다.
